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조사 연구*

- 대구지역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

강 병 일**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김 남 진***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요 약 》

이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아닌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구시내 특수학교 교사 10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남학생, 중학생에게서 학생 자신의 문제행동 특히 공격성 행동으로 인해 교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당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계획된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이 강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교육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 수정·보완, 특수교육 현장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분야간 교류의 필요성, 각 특수학교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실태 파악,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파악의 필요성과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 이 연구는 2010년도 가야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제1저자(kbihhj@hanmail.net)

*** 교신저자(njkim@kay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안전사고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 ‘교육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瑕疵) 또는 학생이나 교원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및 교원의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고’, ‘학생이 학습활동을 영위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이상근, 2006)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어떻게 정의하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의 상해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물어 법정까지 가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3)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0)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건수는 2005년 33,834건,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주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교육법학적 접근까지 이루어졌는데(김소연, 김영일, 2007),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범주화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실태 조사(갈원모, 손기상, 2002; 공배완, 안황권, 2009; 박성은, 정연강, 박은자, 2001; 이정우, 2000; 정남주, 2004), 인식 비교(홍정순, 최창섭, 2006), 교육활동에의 영향(양정모, 2001; 최미리, 박정훈, 2007), 법률적 고찰(고영아, 2009; 김달효, 2007; 김도형, 2007; 한승희, 1999), 학교안전사고의 세부 유형별 실태(차정민, 송윤석, 현성호, 2008; 현성호, 차정민, 송윤석, 박경효, 2009; 황호영, 2004), 국가간 비교(백종인, 2007; 이종규, 2004; 한승희, 1998) 등 주제의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는 위와 같은 학계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2009년도 서울시 학교안전사고 현황(송효근, 2010)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48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58,409천원의 공제급여가 지급되어 발생 건당 평균지급 금액이 1,216,854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유치원 84,607원, 초등학교 226,156원, 중학교 357,079원, 고등학교 704,272원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일 경우 보다 심각한 부상의 정도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자료상의 수치는 보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정하여 산출된 것임을 감안한다면(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서) 특수학교의 공제급여 지급 현황, 학교급별 사고 발생 건수 및 공제급여 지급 금액, 시간대·장소별·부상 부위별·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만 파악 가능함)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혹은 교사의 안전사고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연구(김소연 외, 2007), 정서장애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부기, 200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최성규, 2005) 등에 한정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인지능력 수준과 문제행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최성규, 2005)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적으로 그리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인지적·신체적으로 점차 중도·중복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실태(현황, 사고 처리 방법, 예방 교육 정도,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특수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대구지역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교사들의 안전사고 현황 및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교사들의 학교 안전사고 현황 및 인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육교사들의 학교안전사고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 및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넷째, 학교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대구지역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육교사를 모집단으로 하며, 표본은 정신지체학교, 정서·행동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5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107부가 회수(회수율 71%)되었다.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거나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부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10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분석에 사용된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남	여	전 체
담당 학년	유치부	-	1(2.2)	1(0.9)
	초등부	8(13.3)	18(39.1)	26(24.6)
	중학부	25(41.7)	17(37.0)	42(39.6)
	고등부	27(45.0)	10(21.7)	37(34.9)
특수교육 교직경력	5년 이하	28(46.7)	18(39.1)	46(43.4)
	6~10년 이하	9(15.0)	11(23.9)	20(18.9)
	11~20년 이하	15(25.0)	7(15.3)	22(20.7)
	21년 이상	8(13.3)	10(21.7)	18(17.0)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18(30.0)	16(34.8)	34(32.1)
	정서·행동장애	13(21.7)	11(23.9)	24(22.6)
	청각장애	10(16.7)	7(15.2)	17(16.0)
	시각장애	8(13.3)	5(10.9)	13(12.3)
	지체장애	11(18.3)	7(15.2)	18(17.0)
전 체		60(100.0)	46(100.0)	106(100.0)

이 논문에서는 성, 담당 학년, 특수교육 교직 경력, 특수학교 유형 등 4개 변인 별로 내용이 분석되었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담당 학년 변인은 유·초등부, 중학부, 고등부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2. 검사 도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구현자, 2005; 김부기, 2002; 김소연, 2007; 박현근, 2007)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문항들을 영역에 맞춰 선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작성된 질문지는 예비 검사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21문항(추가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질문지는 배경변인, 학생의 학교 안전사고,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학교안전사고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2> 참조). 완성된 검사 도구(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음)는 우선적으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료 교수를 통해,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들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2〉 질문지의 문항 구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하위문항수)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경험 유무 •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교(급) • 성별 학교안전사고 빈도 • 원인행위자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 사고 원인이 되는 문제행동 유형 •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 학교안전사고 발생 활동 시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유형 	9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경험 • 학교안전사고로 신체적 상해 경험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경험 •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연수 경험 • 교사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규정, 지침의 유무 • 학교안전사고의 처리 방법 •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5(6)
학교안전사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결 요건 •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처리 방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학교안전사고 연수의 주요 내용 	5

3. 조사 및 자료 분석

1)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2010년 10월 5일부터 동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대구 시내 특수 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교에 질문지를 배포하기 전 대표 교사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검토하게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연구자들에 의해 응답 내용의 편집 과정을 거친 후 질문지의 자료들을 입력하였으며 입력 오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응답자들의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첫째,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학교안전사고 대책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항들은 주로 교차분석을 통해 배경변인별 빈도와 비율의 차이를 살폈다. 특히 질문에 대한 해당 답변을 모두 선택하도록 구성된 문항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다.

둘째, 질문에 대해 순위별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활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종합적으로 순위를 나타낼 수 있는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즉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3순위를 묻는 문항의 경우 각 순위에서 해당 응답이 차지하는 빈도와 비율을 알아보고, 이어 1순위에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곱한 합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어 얻은 평균점수를 통해 항목별 비중과 순위를 파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1)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경험 정도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연 평균 1~3회(75.5%) 정도의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4~6회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경우는 2.8%, 연 평균 7회 이상 경험했다는 답변은 1.9%였다. 학교안전사고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여자 교사들(28.3%)이 남자 교사들(13.3%)에 비해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성별을 제외한 여타의 배경변인들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학교안전사고를 고려했을 때 교사의 담당 학년($\alpha=.000$) 그리고 특수학교 유형($\alpha=.007$)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은 교사

의 담당 학년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정도를 정리한 것으로, 중학생들(35.8%)에게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은 초등학생(33.0%), 고등학생(3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사의 담당학년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단위 : 명, %)

구 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 체	x^2
담당 학년	유·초등부	1 (3.7)	20 (74.1)	3 (11.1)	3 (11.1)	26 (100.0)	37.052***
	중학부	-	9 (21.4)	22 (52.4)	11 (26.2)	42 (100.0)	
	고등부	-	6 (16.2)	13 (35.1)	18 (48.6)	37 (100.0)	
전 체		1 (0.9)	35 (33.0)	38 (35.8)	32 (30.2)	106 (100.0)	

*** $p < .001$

특수학교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표 4> 참조) 정신지체학교는 초등부와 중학부(38.2%), 시각장애학교는 초등부(38.5%), 정서·행동장애학교는 고등부(58.3%), 청각장애학교는 중학부(64.7%) 그리고 지체장애학교는 초등부(50%)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학생들(17.0%)보다는 남학생들(83.0%)에게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이 확연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특수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단위 : 명, %)

구 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 체	χ^2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	13 (38.2)	13 (38.2)	8 (23.5)	34 (100.0)	27.103**
	정서·행동장애	-	6 (25.0)	4 (16.7)	14 (58.3)	24 (100.0)	
	청각장애	-	2 (11.8)	11 (64.7)	4 (23.5)	17 (100.0)	
	시각장애	1 (7.7)	5 (38.5)	5 (38.5)	2 (15.4)	13 (100.0)	
	지체장애	-	9 (50.0)	5 (27.8)	4 (22.2)	18 (100.0)	
전 체		1 (0.9)	35 (33.0)	38 (35.8)	32 (30.2)	106 (100.0)	

** $p < .01$

2)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를 원인행위자에 따라 구분했을 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고는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67%)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은 학생 간에 의한 사고(24.5%), 학교 시설·설비에 의한 사고(6.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은 없었다.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을 순위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교사들이 경험한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단위 : 명, %, 점)

원 인	순 위				평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학생의 문제행동	82(77.4)	13(13.2)	6(5.7)		2.62(1)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소홀	1(0.9)	31(29.2)	29(17.4)		0.88(2)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	5(4.7)	23(21.7)	26(24.5)		0.82(3)
학급당 인원과다	9(8.5)	15(14.2)	7(6.6)		0.60(4)
질병(간질 등)	6(5.7)	12(11.3)	9(8.5)		0.48(5)
안전생활지도 부족	3(2.8)	9(8.5)	22(20.8)		0.46(6)
교사의 체벌	-	2(1.9)	7(6.6)		0.10(7)
전 체	106(100.0)	106(100.0)	106(100.0)		

1순위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77.4%)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은 학급당 인원과다(8.5%), 질병(5.7%)의 순이었다. 그리고 2순위에서는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소홀(29.2%),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21.7%), 학생의 문제행동(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3순위에서는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안전생활지도 부족(20.8%),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소홀(17.4%)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3순위를 묶어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평균점수를 보면,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이 2.62점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소홀이 0.88점으로 다음이었으며,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 순이었다. 안전생활지도 부족(0.46점) 및 교사의 체벌(0.10점) 등의 이유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유형

학생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에서부터 차례로 정리하면 공격성 행동(39.6%),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30.2%), 자해행동(17.0%)의 순이었다.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별 발생 빈도는 특수학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alpha=.010$)를 보였는데 (<표 6> 참조), 정신지체학교와 정서·행동장애학교 그리고 청각장애학교는 공격성 행동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학생들에게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학교안전사고 유형은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특수학교별 학생 학교안전사고 유형

(단위 :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6 (17.6)	8 (23.5)	13 (38.2)	7 (20.6)	-	-	34 (100.0)	37.567*
	정서·행동장애	5 (20.8)	5 (20.8)	14 (58.3)	-	-	-	24 (100.0)	
	청각장애	5 (29.4)	4 (23.5)	6 (35.3)	1 (5.9)	1 (5.9)	-	17 (100.0)	
	시각장애	6 (46.2)	1 (7.7)	5 (38.5)	1 (7.7)	-	-	13 (100.0)	
	지체장애	10 (55.6)	-	4 (22.2)	2 (11.1)	-	2 (11.1)	18 (100.0)	

전 체	32 (30.2)	18 (17.0)	42 (39.6)	11 (10.4)	1 (0.9)	2 (1.9)	106 (100.0)
① 주의력결핍 또는 과잉행동	② 자해 행동		③ 공격성 행동				
④ 교출 및 무단이탈 행동	⑤ 방해 행동		⑥ 기타				

*p<.05

4)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간

<표 7>을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순위별로 파악하여 정리한 것으로, 1순위에서는 교실(39.6%), 운동장(15.1%), 계단(10.4%)의 순이었으며, 2순위에서는 운동장(31.1%), 야외 학습장(15.1%), 교실(1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3순위에서는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교실(17.9%)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었으며 통학버스(17.0%)와 복도(1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상의 순위별 결과를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는 교실(1.5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운동장(1.21점), 야외 학습장(0.63점), 복도(0.59점) 순이었다. 이에 반해 특별실(0.36점), 화장실(0.21점), 체육관 및 강당(0.20점)에서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고 답한 교사는 거의 없었다.

<표 7>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단위 : 명, %, 점)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순위)
교실	42(39.6)	12(11.3)	19(17.9)	1.59(1)
운동장	16(15.1)	33(31.1)	15(14.2)	1.21(2)
야외 학습장	9(8.5)	16(15.1)	8(7.5)	0.63(3)
복도	9(8.5)	10(9.4)	16(15.1)	0.59(4)
계단	11(10.4)	11(10.4)	7(6.6)	0.58(5)
통학버스	8(7.5)	10(9.4)	18(17.0)	0.58(5)
특별실	7(6.6)	6(5.7)	6(5.7)	0.36(7)
화장실	1(0.9)	6(5.7)	8(7.5)	0.21(8)
체육관 및 강당	3(2.8)	2(1.9)	9(8.5)	0.20(9)
전 체	106(100.0)	106(100.0)	106(100.0)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활동 시간은 발생 장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방안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쉬는 시간의 발생 정도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6.4%의 점심시간, 14.2%의 야외 수업시간 순으로 반응하였다. 2순위에서는 야외 수업시간이라고 답한 정도가 2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점심시간(20.8%), 쉬는 시간(17.9%)의 순이었다. 3순위는 2순위와 동일하게 야외 수업시간(18.9%), 점심시간(17.9%), 쉬는 시간(1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서부터 3순위까지의 반응을 가중치에 의한 평균점수를 통해 전체적인 순위를 살펴보면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정도가 1.3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쉬는 시간(1.35점), 야외 수업시간(1.14점)의 순이었다.

<표 8>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단위 : 명, %, 점)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순위)
점심시간	28(26.4)	22(20.8)	19(17.9)	1.38(1)
쉬는 시간	30(28.3)	19(17.9)	16(15.1)	1.35(2)
야외 수업시간	15(14.2)	28(26.4)	20(18.9)	1.14(3)
통학도중	11(10.4)	9(8.5)	15(14.2)	0.62(4)
일반교과시간	12(11.3)	8(7.5)	9(8.5)	0.57(5)
체육시간	5(4.7)	5(4.7)	5(4.7)	0.28(6)
특별활동시간	3(2.8)	6(5.7)	6(5.7)	0.25(7)
직업교과시간	2(1.9)	4(3.8)	4(3.8)	0.16(8)
청소시간	-	5(4.7)	3(2.8)	0.12(9)
기타	-	-	9(8.5)	0.08(10)
전 체	106(100.0)	106(100.0)	106(100.0)	

5) 학생의 학교안전사고 상해 유형

다음의 <표 9>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상해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상해 유형은 타박상으로 반응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타박상 다음으로는 살갓이 벗겨지는 찰과상(20.1%), 염좌(11.8%), 피부손상(11.5%), 외부 피부손상(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구손상이나, 뇌손상, 사망 등의 상해 유형은 보고되지 않았다.

<표 9>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상해 유형(복수응답)

상해유형	빈도(명)	%
타박상(멍이 듬)	76	24.2
찰과상(살갓이 벗겨짐)	63	20.1
염좌(삐인 것)	37	11.8
피부손상	36	11.5
외상 피부손상(살이 찢어져 케맨 것 포함)	28	8.9
골절(뼈가 부러진 것)	24	7.6
근육손상	16	5.1
치아손상	15	4.8
탈골(뼈가 빠진 것)	8	2.5
화상	8	2.5
기타	3	1.0
전 체	314	100.0

2.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1)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경험 정도

교사들의 학교안전사고는 그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에 ‘선생님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사실을 파악해 보았다.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21.7%에 해당하는 23명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 각각 21.7%가 교권 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자 교사들의 경우는 초등부에 재직 중인 교사(37.5%)가 그리고 여자 교사들의 경우는 중학부에 재직 중인 교사(35.3%)의 교권 침해 경험이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인별 반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23명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교권 침해의 형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피해(48.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정신적 피해(31.0%), 금전적 피해(20.7%)의 순이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상해 경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5%에 해당하는 45명이었다. 남자 교사(43.3%)가 여자 교사(41.3%)에 비해 신체적 상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를 담당 학년별로 살펴보면 유·초등부의 경우는 신체적 상해 경험의 유무가 50.0%로 동일하였으며, 중학부는 경험이 없다는 반응이 61.9% 그리고 고등부 역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56.8%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들보다 많게 조사되었다. 교직 경력에 있어서도 큰 특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특수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학교와 청각장애학교 그리고 지체장애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의 경우가 정신지체학교와 시각장애학교 교사들에 비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적이 많다는 반응의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45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들의 신체적 상해 유형(복수응답)

상해 유형	빈도(명)	%
타박상(멍이 듬)	26	29.2
찰과상(살갓이 벗겨짐)	17	19.1
피부손상	15	16.9
염좌(삔인 것)	15	16.9
근육손상	9	10.1
외상 피부손상	4	4.5
치아손상	1	1.1
안구손상	1	1.1
탈골(뼈가 빠진 것)	1	1.1
전 체	89	100.0

교사의 신체적 상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타박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29.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찰과상(19.1%), 피부손상과 염좌(16.9%), 근육손상(10.1%)의 순이었다.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던 유형들 중 골절과 화상 그리고 척추손상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발생했던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60.0%)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표 11> 참조). 그리고 교사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35.6%), 학교의 시설·설비에 의한 사고(4.4%)가 그 뒤를 이었다. 유·초등부 교사들의 경우는 학생의 공격성 행동(53.8%) 그리고 본인의 실수(46.2%)에 의한 사고의 순이었으며, 중학부 교사들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87.5%)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고등부 교사들은 본인의 실수(56.3%)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학생의 공격성 행동(37.5%)이 다음이었다. 이와 같이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담당 학년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alpha=.033$)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단위 : 명, %)

구 분		본인의 실수	학교의 시설·설비	학생의 공격성 행동	전체	χ^2
담당 학년	유·초등부	6 (46.2)	-	7 (53.8)	13 (100.0)	10.464*
	중학부	1 (6.3)	1 (6.3)	14 (87.5)	16 (100.0)	
	고등부	9 (56.3)	1 (6.3)	6 (37.5)	16 (100.0)	
전 체		16 (35.6)	2 (4.4)	27 (60.0)	45 (100.0)	

* $p<.05$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답한 60.0%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용 지출 방법을 파악한 결과,

본인의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는 반응이 8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7.4%), 가해학생 부모에 의한 비용 처리(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처리와 학교 측에서 비용 처리가 문항의 보기로 제시되었으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상해 치료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처리 경험을 동시에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81.1%)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18.9%)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86명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세 가지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교육과정에 계획된 시간(30.2%)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수업시간 중(24.4%), 조회와 종례 시간(23.3%)의 순이었다. 예방교육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실시한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방학 직전과 직후에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alpha=.025$) 특수학교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시기를 정리한 것으로 학교별로 교육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즉 정신지체(34.8%)와 정서·행동장애(39.1%)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청각장애(50.0%)와 시각장애(45.5%) 그리고 지체장애(26.7%)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조회와 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담당 학년, 특수교육 교직 경력의 배경변인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사 연수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사 연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2.8% 그리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교사는 47.2%로, 연수를 받은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구체적으로는 정신지체학교(55.9%) 혹은 정서·행동장애학교(83.3%)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반응이 많은데 반해 청각장애학교(58.8%), 시각장애학교(69.2%) 그리고 지체장애학교(66.7%)의 교사들은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alpha=.004$).

<표 13> 특수학교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사 연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있음	없음	전 체	χ^2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19 (55.9)	15 (44.1)	34 (100.0)	15.299**
	정서·행동장애	20 (83.3)	4 (16.7)	24 (100.0)	
	청각장애	7 (41.2)	10 (58.8)	17 (100.0)	
	시각장애	4 (30.8)	9 (69.2)	13 (100.0)	
	지체장애	6 (33.3)	12 (66.7)	18 (100.0)	
전 체		56 (52.8)	50 (47.2)	106 (100.0)	

** $p<.0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56명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들은 주로 단위학교(69.6%)에서 주최한 연수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연수 주최 기관을 파악한 결과, 교직 경력($\alpha=.011$)과 담당학생의 장애 유형($\alpha=.04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변인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교직 경력 5년 이하인 교사들은 90.5%에 이르는 19명이 단위학교에서 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교직 경력 6년 이상 ~ 10년 이하 교사들의 61.5% 역시 단위학교 수준의 연수를 받았으며 23.1%는 대학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1년 이상 ~ 20년 이하 그리고 21년 이상의 교직 경력 교사들은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 주관의 연수에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인 특수학교의 유형별 연수 주최 기관을 살펴보면 정신지체학교 및 정서·행동장애학교 교사들은 단위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이 주최한 연수에도 참여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상대적으로 시각장애학교와 지체장애학교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연수 주최 기관이 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학교안전사고 연수 주최 기관 (단위 : 명, %)

구 분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대학 기관	시민 단체	기타	전 체	χ^2
교직 경력	5년 이하	1 (4.8)	19 (90.5)	-	1 (4.8)	-	21 (100.0)	24.331*
	6~10년	-	8 (61.5)	3 (23.1)	1 (7.7)	1 (7.7)	13 (100.0)	
	11~20년	3 (27.3)	5 (45.5)	1 (9.1)	-	2 (18.2)	11 (100.0)	
	21년 이상	4 (36.4)	7 (63.6)	-	-	-	11 (100.0)	
특수학교 유형	정신지체	-	13 (68.4)	4 (21.1)	1 (5.3)	1 (5.3)	19 (100.0)	26.530*
	정서·행동장애	2 (10.0)	16 (80.0)	-	1 (5.0)	1 (5.0)	20 (100.0)	
	청각장애	1 (14.3)	5 (71.4)	-	-	1 (14.3)	7 (100.0)	
	시각장애	3 (75.0)	1 25.0	-	-	-	4 (100.0)	
	지체장애	2 (33.3)	4 (66.7)	-	-	-	6 (100.0)	
전 체		8 (14.3)	39 (69.6)	4 (7.1)	2 (3.6)	3 (5.4)	56 (100.0)	

* $p < .05$

3) 학교안전사고 규정(지침)

‘선생님의 학교에는 문제행동이나 교출 등으로 학생 혹은 교사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단위학교별 학교안전사고 관련 규정 혹은 지침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있다고 답한 교사가 66%였으며 없다고 답한 교사가 10.4% 그리고 모른다고 답한 교사는 23.6%였다.

이들 중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고 답한 70명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반응이 67.1%로 가장 많았고, 명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8.6%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거의 모른다가 14.3%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특성을 보면 남자(23.7%), 고등부 담당(20.8%), 6년 이상 ~ 10년 이하 그리고 11년 이상 ~ 20년 이하의 교직 경력(23.1%), 정신지체 학교 재직 교사(25.0%)들이 학교안전사고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반응한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에 학교안전사고 관련 대응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서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거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6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88.7%가 이를 경험했었다고 답했으며 11.3%는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교사 혹은 학생의 안전사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을까? 응답자의 50%에 해당하는 53명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음은 교사 혹은 학생 개인 부담의 금전적 보상이 25.5%, 피해학생 측의 자부담 처리가 11.3%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와의 관계(84.9%)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명예 실추와 도의적 가책(6.6%)의 순이었다.

4. 학교안전사고 대책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은 평균 4.00점(5점 만점, SD=.82)에 해당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M=3.95)보다는 여자(M=4.08) 교사들이 그리고 유·초등부(M=4.19) > 중학부

(M=3.95) > 고등부(M=3.94)의 순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배경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배경변인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배경변인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3.95	.87
	여자	4.08	.75
담당 학년	유·초등부	4.18	.68
	중학부	3.95	.93
	고등부	3.94	.77
교직 경력	5년 이하	3.82	.79
	6~10년 이하	4.00	1.12
	11~20년 이하	4.13	.63
	21년 이상	4.33	.59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3.88	.84
	정서·행동장애	4.00	1.06
	청각장애	4.05	.74
	시각장애	3.92	.64
	지체장애	4.27	.57
전체		4.00	.82

2) 학교안전사고 대처·처리·예방 방안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즉 교육활동시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느낄 때 교사들의 대처 방안을 파악하고자 ‘선생님께서도 교육 활동시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느끼실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진행하겠단 답변(4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는다

(22.6%), 교사의 시범으로 대신한다(19.85%), 비슷한 활동으로 대체한다(10.4%)의 순으로 반응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생대상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50.9%)이 요구된다고 답했으며, 다음은 교사대상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23.6%)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담당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alpha=.015$),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학교안전사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x^2
특수 학교 유형	정신지체	19 (55.9)	10 (29.4)	3 (8.8)	1 (2.9)	1 (2.9)	34 (100.0)	30.628*
	정서·행동장애	9 (37.5)	8 (33.3)	-	2 (8.3)	5 (20.8)	24 (100.0)	
	청각장애	9 (52.9)	2 (11.8)	5 (29.4)	1 (5.9)	-	17 (100.0)	
	시각장애	5 (38.5)	1 (7.7)	2 (15.4)	3 (23.1)	2 (15.4)	13 (100.0)	
	지체장애	12 (66.7)	4 (22.2)	1 (5.6)	-	1 (5.6)	18 (100.0)	
전 체		54 (50.9)	25 (23.6)	11 (10.4)	7 (6.6)	9 (8.5)	106 (100.0)	

- ① 학생 대상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 ③ 학교 시설·설비의 정비
- ⑤ 부모들의 인식 변화

- ② 교사 대상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 ④ 법적 제도 보완·정비
- ⑥ 기타

* $p<.05$

학교안전사고의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같이 교원보험을 신설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맡아서 처리하는 방안(48.1%)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현 안전공제회에 보험업무를 참가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32.1%)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련 학교안전사고 연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법(51.9%)을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응했고, 이어서 학교안전사고 대처 방법(34.9%),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및 판례(7.5%), 학교안전사고 사례 및 현황(5.7%)의 순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이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를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는 연 평균 1~3회(75.5%), 남학생(83.0%), 중학생(35.8%)에서 많이 발생하며, 학생 자신(67%)의 문제행동(2.62점)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행동 중에서는 공격성 행동이 가장 많은데 특히 정신지체학교와 정서·행동장애학교 그리고 청각장애학교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는 교실(1.59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점심시간(1.38점), 사고유형으로는 타박상(24.2%)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험의 유무 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남아동이 여아동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O'Reilly, 1996; 최성규, 2005 재인용). 2)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은 교사변인 보다는 학생변인에 두는 것이 지금까지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를 다룬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김소연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이었으며, 김부기(2000)의 연구에서도 정서·행동장애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역시 대부분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안전공제회가 발표한 2009년도 학교급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제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및 기초 통계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기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기초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률이 높은 시간은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시간, 휴식시간이 대부분이었으나 특수학교는 이와 달리 점심시간에의 발생률이 높다. 다만 김부기

(2000)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묶어서 조사하였으며, 김소연 등(2007)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으로 분리해서 조사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특수학교에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임에는 일치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21.7%이다. 이들 중 48.3%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해 더 많다. 또한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29.2%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와 같은 학교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60.0%)에 의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교사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자부담(88.9%)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사 개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학생·친권자가 교사 등의 과실을 주장·입증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신뢰관계가 파탄될 수 있고, 교사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을 쉽게 인정하면 교육내용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교육의 창의성과 발전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여지가 많으며, 유책성의 성립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설립자·경영자 등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영아(2009)의 주장은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으며(81.1%), 많은 수가 교육과정에 계획된 시간(30.2%)을 이용하고 있었다. 예방교육은 체험학습 안전(26.2%)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45.3%)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52.8%)가 많았으며 주로 단위학교(69.6%)에서 실시하는 연수였다. 재직 중인 학교에 학교안전사고 규정 혹은 지침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66%였으나, 대부분 그 내용을 대략적(67.1%)으로만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50%)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와의 관계(84.9%)를 가장 힘들어 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중 사고 처리 과정을 구현자(200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피해학생측 양해와 피해자 자부담을 통해 사고를 처리한다는 데는 차이를 보였으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점은 일치하였다.

넷째, 특수교육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4.00점/5.00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원보험의 신설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방안(48.1%)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일반교육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한 연구(양정모, 2001; 최미리 외, 2007)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 역시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김달효, 2004)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 언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서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둘째, 특수교육 현장의 학교안전사고는 특수교육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해당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학교 외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 중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수학급은 제외되었다.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학교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특수학급에서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연구 및 특수학교와 비교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이 연구는 대구지역 특수학교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라는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장시킴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될 경우,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갈원모, 손기상 (2002). 초·중등학교 학교안전 실태조사. **2002년 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6-42.
- 고영아 (2009).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25(3), 381-408.
- 공배완, 안황권 (2009).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6(2), 279-298.
- 구현자 (2005).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교사 인식 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달효 (2007).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168-179.
- 김도형 (2007).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16(1), 253-277.
- 김부기 (2002).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소연 (2007).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 김영일 (2007).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2), 125-147.
- 박성은, 정연강, 박은자 (2001). 학교의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 **중앙간호논문집**, 5(2), 79-88.
- 박현근 (2007).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종인 (2007). 학교안전사고구제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44, 337-356.
- 송효근 (2010).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현황. **교육정책포럼, 통권 제206호**.
http://epnic.kedi.re.kr/EpnicForum/Epnic/EpnicForum02Viv.php?Ac_Num0=7061&Ac_Code=D0010203
- 양정모 (2001).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근 (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문계·실업계 체육교사들의 법적이 지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우 (2000).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조사. **교육논리와 실천**, 10(2), 421-438.
- 이종규 (2004). 한국과 일본의 학생안전사고관리 및 보상제도 비교. **보험학회지**, 68, 39-72.
- 정남주 (2004).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와 보상. **한국레저스포츠학회지**, 8, 107-118.
- 차정민, 송윤석, 현성호 (2008). 소방과학교실을 통한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육 제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70-276.
- 최미리, 박정훈 (2007).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535-548
- 최성규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 **특수교육연구**, 12(1), 119-141.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0). **2009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서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3).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승희 (19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 **교육행정학연구**, 17(2), 87-112.
- 한승희 (1998). 학교안전사고 연구의 동향-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 271-290.
- 현성호, 차정민, 송윤석, 박경효 (2009). 초등학생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3(2), 67-77.
- 홍정순, 최창섭 (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3(1), 104-121.
- 황호영 (2004). 학교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현황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1), 12-2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Negligent
Accidents for Teachers and Students in Special Schools
: Focus on Special Schools in Daegu

Kang, Byung Il

Kaya University Dept.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Kim, Nam Jin

Kaya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reventive measures for negligent accidents in special schools an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measur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negligent accidents for teachers and students in special schools, not by actual statistics but by teacher's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106 teachers in special schools located in Daegu city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 survey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negligent accidents due to aggressive behaviors during a break happened frequently to middle school male students in special schools. Second, teachers were violated in their rights by negligent accidents and suffered from bodily injuries by students' aggressive behaviors. Third, many teachers implemented preventive disciplines for negligent accidents with a lecture during the scheduled time in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Fourth, special school teachers felt psychological burdens from negligent accidents in schools, and were intimidated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due to the burdens.

This study suggested the amendments of laws suitable for the special education fields, the necessity of multi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he evalu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negligent accidents according to special school types, and the necessity of an evaluation of negligent accidents for special class students. The limitations in this study were discussed, too.

Key Words

: special schools, school negligent accidents

논문 접수: 2010. 11. 04 심사 시작: 2010. 11. 10 게재 확정: 2010. 12. 15